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67
----------	-------

제출연월일 : 2010. 10.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더불어 잘 사는 복지마포」 구현 및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별 소속과를 연계관계가 있는 국으로 변경하고, 행정수요에 따른 신설과를 만들어 업무를 개편함.(안 제4조~제8조)

(1) 행정관리국 : 총무과, 공보관광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생활안전과·민원여권과

- 소관사무 중 “신청사건립 예산, 설계변경, 현장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전산 및 지역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구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행”, “재난 대응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도시 및 생활안전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2) 기획재정국 : 기획예산과·지역경제과·재무과·전산정보과·세무1과·세무2과

- 소관사무중 “전산 및 지역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

(3) 주민생활국 : 복지행정과·일자리진흥과·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교육지원과·청소행정과·환경과

(4) 도시관리국 : 주택과·도시계획과·도시경관과·건축과·지적과·공원녹지과

(5) 건설교통국 : 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건설관리과·토목과·치수과
- 소관사무중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을 “풍수해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구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재난 대응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자전거교통에 관한 계획 수립 및 관리”를 신설

나. 보건소 분장사무 및 직제를 조정함(안 제9조~제12조)

(1) 보건소 : 보건행정과, 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2) 보건소의 분장사무를 규정함

다. 식품안전추진반 존치기간 만료에 따라 제11조의2(한시기구)를 삭제한다.

라. 기구재설계에 따른 관련조례를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개정방식으로 개정

3. 개정근거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계획 (총무과-16253(2010.09.29)호)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가. 관계근거

- (1) 지방자치법(2010.6.8 법률 제10344호) 제112조
-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0.9.1 대통령령 제22356호) 제24조, 제25조, 제29조, 제3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0. 9. 29. ~ 10. 5.(제출된 의견 없음)
-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0.10.07)
-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2조 내지 제120조”를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내지 제8조 및 제13조 내지 제15조”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전산정보과”를 “생활안전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의2호 및 제36호, 제36의2호를 삭제하며, 제36의4호, 제36의5호, 제36의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의4. 구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36의5. 재난 대응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36의6. 안전도시 및 생활안전증진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 중 “재무과·세무1과”를 “재무과·전산정보과·세무1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1. 전산 및 지역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를 “복지행정과·일자리진흥과·사회복지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건축과·도시디자인과·지적과”를 “도시경관과·건축과·지적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치수방재과”를 “치수과”로, 제2항제30호 중 “수방”을 “풍수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5호 및 제36호를 삭제하며,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 자전거교통에 관한 계획 수립 및 관리

제9조 중 “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 제113조”로,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에”로, “둔다.”를 “설치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두며 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할”를 “총괄”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직제 및 업무) 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를 둔다.

② 보건소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2.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4. 노인보건사업
5.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6.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7.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8.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9.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11.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12.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3.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15.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
16. 식품위생·공중위생·위생업소 감시업무

17.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수거·단속 등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본청의 국·과 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관 사무를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치수방재과장”을 “생활안전과장”으로 한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치수방재과장”을 “생활안전과장”으로, 제10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제10조제4항제4호 중 “치수방재과장”을 “생활안전과장”으로 한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치수방재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행정과장”으로 한다.
7.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치수방재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교육환경개선팀장”을 “교육지원팀장”으로 한다.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한다.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보건위생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보건위생과장”을 “위생과장”으로, 제6조제3항제3호 중 “보건위생과장”을 “위생과장”으로, 제6조제4항 중 “보건위생과”를 “위생과”로 한다.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4호 중 “치수방재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 중 “치수방재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치수방재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자활고용지원팀장”을 “기금 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을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제10조제8항 중 “의약과장”을 “생활안전과장”으로, “의무팀장”을 “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제13조제1항 중 “보건소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의무팀장”을 “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전산정보과장”으로 한다.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위임사무의 주관국란 중 “주민생활국(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국(복지행정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2조 내지 제120조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 내지 제8조 및 제13조 내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 ----- -----</p>
<p>제4조(행정관리국) ① 행정관리국에 총무과·공보관광과·자치행정과·문화체육과·전산정보과·민원여권과를 둔다.(개정 2008.2.14) ② (생략) 1.~7.(생략) 7의2 신청사건립관련 예산, 설계변경, 현장관리 등에 관한 사항 8.~35.(생략) 36. 전산 및 지역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 36의2. 전산 및 지역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 36의3.(생략)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p>	<p>제4조(행정관리국) ① 행정관리국에 총무과·공보관광과·자치행정과·문화체육과·생활안전과·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 1.~7.(현행과 같음) 7의2 <삭 제> 8.~35.(현행과 같음) 36. <삭 제> 36의2 <삭 제> 36의3.(현행과 같음) 36의4. 구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36의5. 재난 대응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36의6. 안전도시 및 생활안전증진 등에 관한 사항</p>
<p>제5조(기획재정국)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지역경제과·재무과·세무1과·세무2과를 둔다. ② (생략) 1.~40.(생략) <u><신 설></u></p>	<p>제5조(기획재정국)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지역경제과·재무과·전산정보과·세무1과·세무2과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 1.~40.(현행과 같음) 41. 전산 및 지역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p>

현행	개정안
<p>제6조(주민생활국) ① 주민생활국에 <u>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교육지원과·청소행정과·환경과</u>를 둔다.</p> <p>② (생략)</p>	<p>제6조(주민생활국) ① 주민생활국에 <u>복지행정과·일자리진흥과·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교육지원과·청소행정과·환경과</u>를 둔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도시관리국) ① 도시관리국에 주택과·도시계획과·<u>건축과·도시디자인과·지적과·공원녹지과</u>를 둔다.</p> <p>② (생략)</p>	<p>제7조(도시관리국) ① 도시관리국에 주택과·도시계획과·<u>도시경관과·건축과·지적과·공원녹지과</u>를 둔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건설교통국) ① 건설교통국에 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건설관리과·토목과 및 <u>치수방제과</u>를 둔다.</p> <p>② (생략)</p> <p>1.~29.(생략)</p> <p>30. <u>수방대책에 관한 사항</u></p> <p>31~34.(생략)</p> <p>35. 구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p> <p>36. 재난 대응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p> <p><u><신설></u></p>	<p>제8조(건설교통국) ① 건설교통국에 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건설관리과·토목과·<u>치수과</u>를 둔다.</p> <p>② (생략)</p> <p>1.~29.(현행과 같음)</p> <p>30. <u>풍수해대책에 관한 사항</u></p> <p>31~34.(현행과 같음)</p> <p>35. <삭제></p> <p>36. <삭제></p> <p>37. <u>자전거교통에 관한 계획 수립 및 관리</u></p>
<p>제3장 보건소</p>	<p>제3장 보건소</p>
<p>제9조(설치) <u>법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를 둔다.</u></p>	<p>제9조(설치) 「지방자치법」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p>
<p>제10조(소장)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두며 <u>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② 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보건소의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p>	<p>제10조(소장)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p> <p>② 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보건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p>

현행	개정안
<p>제11조(업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 9조에 규정한 소관사무 및 식품위생·공중 위생·위생업소 감시업무,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수거·단속 등을 수행한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11조(직제 및 업무) 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를 둔다.</p> <p>② 보건소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2.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4. 노인보건사업 5.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6.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7.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8.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9.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11.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12.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3.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u>제11조의2(한시기구) 식품안전추진반을 신설하여 2010.12.31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한다.</u></p> <p><u>제12조(직제 등) 보건소의 직제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u></p>	<p><u>15.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u></p> <p><u>16. 식품위생·공중위생·위생업소 감시업무</u></p> <p><u>17.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수거·단속 등</u></p> <p><u>제11조의2<삭제></u></p> <p><u>제12조<삭제></u></p>

검 토 보 고 서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10. 10. 21)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명 금 길]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0년 10월 7일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2010년 10월 8일

4. 근거법령

가. 지방자치법(2010. 6. 8 법률 제10344호)제112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0. 9. 1 대통령령 제22356호)제24조, 제25조, 제29조, 제30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더불어 잘사는 복지마포」 구현과 급변하는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중심의 행정조직으로 재설계하여 구정 효율성 증진과 생산성 향상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마포구 행정 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임

[주요내용]

- (1) 안 제1조(목적)에서는 ~ 내지를 ~부터 ~까지로 법률용어를 순화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구분청 직제변경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보건소의 직제변경을 규정하였음
- (2) 현행 5국, 1소, 1사무국, 1담당관, 31과, 1추진반, 16동 170개 팀에서 5국, 1소, 1사무국, 1담당관, 34과, 16동 172개 팀으로 재설계되어 3개 과와 2개팀이 증가되었고 1개의 추진반이 감소하였음
- (3) 민선 5기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설된 부서(과)로는 행정관리국 생활안전과, 주민생활국 일자리진흥과, 보건소 보건행정과 등 3개 과가 되겠으며 명칭변경과 함께 동시에 기능을 보강 또는 재편한 부서로는 주민생활국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행정과,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를 도시경관과,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를 치수과, 보건소 보건위생과를 위생과 등 4개과가 되겠으며 전산정보과가 행정관리국에서 기획재정국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음
- (4) 신설된 팀으로는 생활안전과 안전도시팀, 교육지원과 도서관팀, 주택과 공공관리팀, 공원녹지과 경의선공원팀, 교통행정과 자전거교통팀,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등 6개 팀과 정식기구로 승격된 일자리진흥과의 사회적기업팀, 일자리사업팀, 일자리지원팀이 되겠음

- (5) 기능축소, 유사, 중복업무로 통폐합된 팀으로는 감사담당관 조사팀, 총무과 대외협력노무팀, 기획예산과 정책통계팀, 교육지원과 교육지원팀, 도시경관과 도시디자인팀, 위생과 원산지지도팀 등 12개 팀이 6개 팀으로 조정되었으며 공원녹지과의 용강시범아파트정비팀이 폐지되었음
- (6) 부서간 팀 이동은 재난관리팀이 치수방재과에서 생활안전과, 민방위팀이 자치행정과에서 생활안전과, 생활보장팀이 사회복지과에서 복지행정과, 건축물정비팀이 주택과에서 도시경관과, 보건운영팀이 의약과에서 보건행정과, 식품안전팀과 원산지지도팀이 식품안전추진반에서 위생과로 7개팀이 조정되었음
- (7) 기능개선에 적합하도록 명칭이 변경된 팀으로는 감사담당관의 민원조사팀이 민원소통팀, 문화체육과의 체육팀이 체육진흥팀, 기획예산과 기획조정팀이 기획팀, 재무과 심사팀이 계약심사팀, 복식부기지출팀이 지출팀, 세무2과 체납징수2팀이 세무관리팀, 일자리진흥과 일자리정책팀이 사회적기업팀,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이 보육행정팀, 저출산보육팀이 저출산대책팀,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팀이 청소작업팀, 지적과 새주소관리팀이 도로명주소팀, 건설관리과 공공용지팀이 건설행정팀, 보건행정과 의료운영팀이 보건운영팀, 위생과 원산지관리팀이 원산지지도팀, 지역보건과 방문보건팀이 가족보건팀 등으로 15개 팀이 조정되었음

[검토의견]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민생안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구민중심의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확대 강화하여 더불어 잘 사는 복지마포건설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구민들이 안심하고 살아 갈 수 있는 안전도시 구축, 질 높은 보건행정 서비스와 의료안심 정책 추진을 위한 보건소의 기능을 보강하는 등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재편되었으며 대체적으로 업무량, 업무의 연관성 부서의 업무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재설계되었고 상위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5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개정되었고 입법예고 등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같은 국에서 과의 명칭이 유사한 의미를 상호 내포하고 있거나 관장하고 있는 업무의 속성보다도 포괄적 개념의 부서 명칭이 있어 혼동의 우려가 있으며 행정의 연속성, 안정성, 신뢰성의 견지에서 과 또는 팀의 명칭은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기존의 명칭을 그대로 살리면서 신중하게 변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개편의 후속조치로는 사무실 확보, 관련 서류 및 장부의 정비, 인력배치, 이에 따른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사전 홍보활동 등을 전개하여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민원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